

Q

안녕하십니까? 당 사업장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통해 배관을 이용, 제품 생산을 위하여 하루 5톤 이상 LPG를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체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중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이를 유해, 위험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6호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시설'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내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이 시행령 33조5의 2항 6호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의무의 범위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 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이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하여 관리된다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시설이 아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예 : 용해로, 건조로 등)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Q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하면서 각종 국소배기장치를 보게되는데 일부는 변형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진장치(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국소배기장치로 인정하고 자체검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국소배기장치는 사용물질에 따라서 제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있고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으므로 제진장치가 없는 경우에도 국소배기장치로 인정을 하고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저희 현장은 도심지에 위치한 고층빌딩공사 현장으로 화기작업(용접, 용단)이 많습니다. 화기작업시 발생하는 불티에 대해 불티방지포 등을 이용하여 불티의 비산을 억제하지만, 불티비산에 대한 억제가 불가능한 부분이 많고 또한 원천적으로 방지가 어려워 별도의 불티감시자를 화기작업장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티감시자는 타업무를 금지하고 불티에 대한 감시만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인원(불티감시자)에 대한 안전관리비로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적용할 수 있다면 어느 항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제2001-22호)의 별표2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항목 중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사업장의 경우 화기작업시(용접, 용단) 별도의 불티감시자가 용접 또는 용단작업의 작업지휘나 작업감시의 목적이 아니고 공사장내 순수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불티감시신호자 역할을 한다면 그 인건비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로굴착에 따른 강제 가설중앙 분리대와 안전웬스 설치 및 제거가 실시설계내역서 상에 포함되어 있는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또한 파일 항타작업시 현장에서 약 100m 거리에 인접해 있는 목장에서 소음진동으로 가축의 스트레스로 인한 작업중단 등의 민원발생이 제기되어 방음벽을 설치코져 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중 2안전시설비 등의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방음, 방진설비의 안전관리비목으로 계상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 제1항에 의거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가설공사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현장 인근 주민이나 가축을 위한 방음벽설치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 알려드립니다. 